

공제급여 청구 안내

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(요양급여) 2항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.

-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(급여항목)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,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(**비급여 항목**)에 대하여는 **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**

1. 공제급여 청구시 제출서류

|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| 청구금액 50만원 이상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제급여(위로금, 보전비용) 청구서○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○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○ 통장사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제급여(위로금, 보전비용) 청구서○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○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○ 통장사본○ 진단서○ 주민등록등본 |

- MRI진단, 의료기상사 보조기 구입 등은 주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진료항목별로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의료기 상사에서 보조기 구입시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제출)
- 공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. 단, **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**
- 서류접수는 **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전산등록,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**
(팩스접수 불가)

2.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
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상급병실 입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급병실료(병실사정, 개인사정 등)는 지급하지 않음 ※ 다만 전신화상자,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,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지급 | | | | | | | | |
| 2. 안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,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 지급 | | | | | | | | |
| 3. 물리치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, 신장분사치료, 테이핑 등 비급여로 발생하는 모든 재활 및 물리치료 지급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4. 한방치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침과 뜸 등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○ 첩약, 약침술, 한방물리치료, 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5. 검사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열검사, 성장판 검사, 운동능력 평가, 코로나 검사 지급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6. 재료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수캐스트, VACO PED(바코페드), 유착방지제(메디커튼, 하이베리 등), 창상피복제(콜라템프 G, 뉴트로페어즈 등), 콜라겐 조직 보충재(리젠셀, 콜라실드, Mygen 등), 골유합촉진제(Bongener 등), Zipline 등 이와 유사한 효능을 지닌 비급여 제품은 지급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7. 주사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○ B형 감염백신, 영양제(아미노산 보급, 이엔지주, 오마프원페리주, 뉴트리플렉스 페리주, 멀티블루, 유니씨주, 아데노피, 헤파멜즈, 메가그린, 유한뼈곰핵사, 네오파 등), 성장호르몬 주사, 인대강화(증식)주사, 조직 재생활성제, 효소제, 프롤로 테라피, 통증완화주사, 부종완화주사, 콘드론, 플라센텍스주 등 이와 유사 효능을 지닌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8.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대법원 2011다77238, 2012.12.13. 선고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9. 치아보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치아보철비 지급 범위(1대당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도재전장관 치아보철</th> <th>캐스트코아</th> <th>포스트</th> <th>레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0,000원(2회 한도)</td> <td colspan="3">150,000원(1회 한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임플란트 1대당 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인정 (※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) ○ 기타 치아보철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(견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)는 도재전장관 치아 보철에 준하여 1회 한정하여 인정 |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| 캐스트코아 | 포스트 | 레진 | 500,000원(2회 한도) | 150,000원(1회 한도) | | |
|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| 캐스트코아 | 포스트 | 레진 | | | | | | |
| 500,000원(2회 한도) | 150,000원(1회 한도) | | | | | | | | |
| 10. 제증명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단서 수수료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. 다만, 공제회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정. ○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. | | | | | | | | |

| 11. 성형수술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2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. ○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흉터 또는 변형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1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. ○ 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. |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|--|
| | 구분 | 지급기준 | 비고 | |
| | 수술비 | 선상흉터 | 10만원/cm |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(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) |
| | | 면상흉터 | 20만원/cm ² |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|
| | | 조직함몰 | 20만원/cm ² | 연조직(soft tissue)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 |
| 레이저치료비 | 25cm ² 미만: | 153,540원/회 | 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하며,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. | |
| | 25cm ² 이상 100cm ² 미만: | 255,900원/회 | | |
| | 100cm ² 이상: | 358,260원/회 | | |

※ 참고사항 ※

1. 관련: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-1115(2023.02.28.)'학교안전사고 분류 및 사고통지 체계 개선 안내'
등·하교중 발생한 교통사고 교육청 보고 및 공제회 통지
(학생들의 교통사고 분류체계를 위해 사고통지를 의무화 하기 위함으로, **보상은 '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'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은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므로 손해보상은 사고의 주체가 되는 자동차의 손해배상보장법에 보상 받아야 함**)
2. 학교배상책임공제제도(**차량파손, 휴대폰 분실·파손, 제3자 인적·물적 피해 등**)는 **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사업이므로 02-793-5015로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의 신체상해사고만 보상합니다.(안경파손 및 물품파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)

붙임 1**학교안전사고통지 절차 안내**

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 → 아이디 찾기(학교명 입력), 비밀번호 (초기1234) 입력 후 로그인 → 학교안전사고통지 → 사고등록 → 내부결재 사고신고서 파일 첨부하여 사고등록완료 → '통보' 버튼(학교장 결재는 학교장 서명 완료 후 자동 통보)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학교안전사고 발생신고서 수기결재 받고 파일업로드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온라인 결재></p> <p>1.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-학교아이디 : 학교아이디 (숫자 또는 영문) -교장성생님 아이디: 학교아이디_head 비밀번호 : 초기1234, 변경 학교비밀번호</p> <p>2. [학교장서명] 버튼 → 승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오프라인 결재></p> <p>-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결재받은 문서를 파일업로드하여 통보버튼 클릭</p> |

붙임 2

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

□ 공제급여 청구 메뉴 페이지입니다.

접수된 사고에 한하여 학교 또는 학부모 측에서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

2

| 사고발생번호 | 사고자 | 사고발생시간 | 청구자 | 청구구분 | 청구금액 | 결정금액 | 처리상태 |
|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Temp1-2018-0066575 | 11/2학년 | 20-06-12 | 학 / 부모 | 중간/요양급여 | 123 | 0 | <input type="button" value="학부모청구"/> |

① 공제급여청구 화면에서는 해당학교에서 작성한 청구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② 청구서 작성 버튼 클릭 → 학생 정보 입력 → 조회 → 사고번호 클릭 → 청구서 작성

공제급여청구

3

③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스캔파일을 모두 파일 업로드 → 확인

※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서류 오프라인(우편) 제출도 가능하고,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.

④ 학교에서 청구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, 청구인에게 청구인 서명 요청 알림이 발송됨.

| 구분 | 내용 | 발송대상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청구서 청구인 서명요청</p> | <p>공제급여 청구서 서명요청 안내 #(학교명)#(사고자)님의 #(구분(학교안전사고/학교폭력))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인 서명이 요청되었습니다.</p> <p>*절차안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(http://www.schoolsafe.or.kr) 2. 학부모시스템 모바일 인증을 통한 로그인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상단 청구인서명 메뉴선택  <p>*문의사항은 #(학교안전공제회명)#(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)로 연락부탁드립니다.</p> | <p>청구인</p> | <p><u>학교에서 청구서 등록 시 발송됨</u></p> |

※ 문의 : 유치원·초등학교 담당자 : 062-380-4278, 4279
 중학교 담당자 : 062-380-4277
 특수학교·고등학교 담당자 : 062-380-4158